

영토와 영유권분쟁 그리고 독도

22535950 심규정



1.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했다.
행정, 경찰 주둔, 실효 지배를 모두 대한민국이 이어 왔다.

2. 세종실록지리지 (1454)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명시되었고,
두 섬이 날씨가 좋으면 서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우산(독도)과 무릉(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 기술,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나타낸다.

4. 일본 에도 막부 인정 (1696)

조선 어부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후 에도 막부는 울릉도·독도 출어를 금지했다.
일본의 영토라면 에도 막부가 출어금지를 내릴 이유가 없다.

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포함시켜 행정구역으로 편입.
이는 국법에 따른 공식 영토화이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독도를 연합국에 반환 요구하였다.

8. 연합국의 입장 변화

연합국 군정은 한국의 독도 관할을 인정했고, SCAPIN 제677호
(1946)에서도 독도를 일본 통치 범위에서 제외했다.

9.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1954년 이후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독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10. 국제법상 '실효 지배' 원칙

국제법에서는 실제로 지배, 행정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유권 인정.
한국은 이에 따라 독도를 관리 중이다.

11. 일본의 주장과 모순

일본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 주장하지만,
자국 사료에서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

+ . 독도 교육의 필요성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닌, 역사와 주권의 상징이다.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